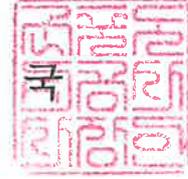


군포도시공사 제1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포도시공사 사장 배재국



2026년 3월 12일

군포도시공사 규정 제 167 호

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

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직원의 승진은 상위 직급 결원의 범위 안에서 실시한다. 다만,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직급의 경우에는 통합정원의 범위 내에서 인사 운영 계획과 조직 운영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장이 승진 예정 인원을 정한다.

제28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이 완료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6개월을 더한 기간 동안 승진에서 제한한다.

1. 금품 및 향응 수수
2. 공금의 횡령·유용
3.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4. 채용비위

부 칙

이 규정은 2026. 3. 1.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경 영 기 획 실
입 안 자	직 위 성 명	경 영 기 획 실 장 곽 성 우
	직 위 성 명	인 사 총 무 팀 장 신 재 두
	담당자 성명 (전 화)	현 진 환 (3 9 0 - 7 6 4 1)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5조(승진순위)</p> <p>① 직원의 승진은 상위 직급 결원의 범위 안에서 실시한다.</p>	<p>제25조(승진순위)</p> <p>① ----- -----<u>. 다만,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직급의 경우에는 통합정원의 범위 내에서 인사운영 계획과 조직 운영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장이 승진 예정 인원을 정한다.</u></p>
<p>제28조(승진 및 승급의 제한)</p> <p>⑤ <u>(신 설)</u></p>	<p>제28조(승진 및 승급의 제한)</p> <p>⑤ <u>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이 완료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6개월을 더한 기간 동안을 승진에서 제한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금품 및 향응 수수</u> <u>2. 공금의 횡령·유용</u> <u>3.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u> <u>4. 채용비위</u>

[참고사항]

□ 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 운영 관련 지침 개정(2026.01.)

현행	개정안
[5] 승진 제한	
○ [신설]	○ 지방공사·공단·공단의 장은 징계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채용비위에 해당하는 행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 동안 승진을 제한해야 함.